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61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재택의료센터 지원 근거 마련 등	3

I. 개요

1.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56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13.

(3) 회 부 일 : 2025. 10.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

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
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
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
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재택의료센터 지원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재택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재택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방문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재택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되었으며, 2025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195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임.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욕구 해소를 위한 의료·요양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
 - *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 희망 (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 사업 개요 ※ 1차('22.12.~'23.12.) / 2차('24.1.~12.) / 3차('25.1.~)
- (수행기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 * 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

구 분	급 여 비 용
건강보험	▶ 방문진료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지급) - 의사 1회 방문 시 <u>129,650원</u>(의원급), <u>137,920원</u>(지방의료원), <u>106,290원</u>(한의원), 본인부담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15%
+	
장기요양 보험	▶ 재택의료기본료¹⁾, 추가간호료²⁾, 지속관리료³⁾ 1)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2) 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2,310원 지급(월 3회까지 청구),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본인부담 無

자료 : 보건복지부

< 재택의료센터 현황('25.7.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개소 수	구분	개소 수
전체	195	경남	7
서울	44	경북	4
부산	10	전남	7
대구	6	전북	14
광주	8	충남	11
대전	9	충북	4
인천	13	제주	4
경기	45	울산	-
강원	8	세종	1

자료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연구(이정석 외, 건강보험연구원, 2023)’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이용자와 가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의성을 높여 수급자와 가족 주돌봄자 모두 90% 이상이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참여하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만족도 또한 모두 70% 이상으로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재택의료서비스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음¹⁾.

□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정석 외, 건강보험연구원, 2024)’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입원율을 낮추고 입원기간을 줄여 입원 진료비를 낮추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비용 측면에서도 총 진료비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결론적으로 현재 재택의료센터 모형이 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적 문제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었음²⁾.

□ 이에 개정안은 재택의료센터의 확충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하여 재택의료센터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재택의료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기 전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1) 이정석 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연구(건강보험연구원), 2023. p.178~181

2) 이정석 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 : 의료이용과 시설 입소예방, 2024 p.128-129

3)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의 법적 지위 뿐만 아니라 재택의료의 장기요양급여화 여부에 대한 검토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현행법 상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로 정해져 있고,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재택의료기본료’를 지급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현행법⁴⁾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기 위하여는 장기요양기관이어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관련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위한 시설·인력 요건,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참고로, 재택의료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포괄하는 경우 현행 법⁵⁾에 따를 때 장기요양기관의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는 기 마련되어 있고,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사항도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사업 도입 모형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인 재택의료센터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법적 지위, 재택의료기본료 등 시범사업 수가의 장기요양급여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향후 운영 및 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충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도입 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기본계획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